

#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1. 제안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 부과
-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 도입·운영

## 2.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조, 안 별표 1)
- 의견진술 -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의견 진술기회부여(안 제3조)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7조, 안 별표 1)
-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안 제8조)
  -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안 제8조제1항)
  -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안 제8조제2항)
  -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50% 감액 부과(안 제8조제3항)
- 신고방법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 작성 후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안 제11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안 제14조)
  - 지급방법 : 신고자의 실명계좌 입금(안 제14조제1항)
  - 지급시기 : 과태료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안 제14조제2항)
-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안 제15조)
- 신고 포상금 조달 -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17조)

## 3.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41조,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시행령 제8조,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28조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환경부)
- 입법예고(2003. 10. 14 ~ 11. 3)결과 :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2. 2. 4 법률 제 6653)에 의거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안으로써,

- 안 제2조 (과태료부과기준) - 안 별표 1참조
- 안 제3조(의견진술)

과태료 처분 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인의 소명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안 별표 1참조
- **안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만 부과하며(안 제8조제1항)
  -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안 제8조제2항)
  -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50%감액 부과 (안 제8조제3항)하는 안은 탄력성 있는 행정의 운영방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신고방법)**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서 작성 후 관할구청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록 문서화하였으며,
- **안 제14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 지급방법 : 신고자의 실명계좌 입금
  - 지급시기 : 과태료고지서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 **안 제17조(신고 포상금 조달)**

신고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담한다는 안으로서,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과 태 료                                                                                                                             |       |       |               | 포상금액 |
|-----------------------------------------------------------------------------------------------------------------------------------|-------|-------|---------------|------|
| 부 과 대 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br>(이후) |      |
|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       |       |               |      |
|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때                                                   |       |       |               |      |
|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100   | 200   | 300           | 20   |
|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 50    | 100   | 200           | 10   |
|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 30    | 50    | 100           | 7    |
| (4) 객실과 객석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 10    | 30    | 50            | 3    |
|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       |               |      |
|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 100   | 200   | 300           | 20   |
|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 50    | 100   | 200           | 10   |
| (3) 객실 20실 이사의 숙박업소인 경우                                                                                                           | 30    | 50    | 100           | 7    |
|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 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300   | 300   | 300           | 30   |
|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 300   | 300   | 300           | 30   |

| 과 태 료                                                                                                                                         |       |       |               | 포상금액 |
|-----------------------------------------------------------------------------------------------------------------------------------------------|-------|-------|---------------|------|
| 부 과 대 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br>(이후) |      |
|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100   | 200   | 300           | 20   |
|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50    | 100   | 200           | 10   |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30    | 50    | 100           | 7    |
|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       |       |               |      |
|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0   | 200   | 300           | 20   |
|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0    | 100   | 200           | 10   |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30    | 50    | 100           | 7    |
|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10    | 30    | 50            | 3    |
|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       |               |      |
|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 100   | 200   | 300           | 20   |
|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 50    | 100   | 200           | 10   |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 30    | 50    | 100           | 7    |
|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 10    | 30    | 50            | 3    |
|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100   | 200   | 300           | 20   |